

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
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이훈기의원 대표발의)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후임 원장 임명 절차를 재직 중인 원장의 임기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착수하도록 함(안 제12조 제5항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동 찬)